

## 특별상수여 규정

제1조(목적)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특별상(이하“상”이라고 함)은 기부자가 조명·전기설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자의 자격) 기부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명·전기설비에 관한 학문 또는 기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기부금을 납입한 자.
2. 특별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기금을 기부한 특별회원사
3. 기타(일반)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기부한 개인 또는 법인

제3조(상금의 기준) 상금의 기준은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정한다.

1. 특별상은 원칙적으로 명예로서 부상은 기부자가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2. 기부금이 소액으로 인한 과실금 으로 부상이 어려울 경우 기부자와 협의로 원금 사용으로 소멸 시 까지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상의 종류와 명칭) 상의 종류는 학술상, 기술상, 공로상으로 나누며 명칭은 기부자의 이름, 아호, 법인명, 또는 전문분야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기증자  | 상의 명칭                         | 상의 종류(예시)               |
|------|-------------------------------|-------------------------|
| 공로자  | 전문분야 또는 이름, 아호를 사용한 명칭        | (이순신)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
| 특별회원 | 전문분야, 법인명 또는 법인대표의 아호를 사용한 명칭 | “                       |

제5조(기부금의 운용) 기부금은 기금관리규정에 준하되 특별상 수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정회원이 기부한 기부금은 법정이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 및 일반이 기부한 기부금은 기부금의 일부는 특별상 수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학회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명의 설정) 상명의 설정은 상훈심의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 각상에 대한 수상자 선정과정은 기부자의 심사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특별상의 종류(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위원회, 연구회의 추천으로 상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상의 수여)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3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9월 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